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6호 2019. 9. 30.(월)

규 칙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공 고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6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8
-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7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3

회람							
----	--	--	--	--	--	--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79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산정동 통·반명과 관할구역 란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3통	4	행하길 21,22,22-1,23~24,26,28,28-1~5,32,32-1~2 행하길20번길 3,3-1~3,5,5-1~2
	4통	1	산정동 287-67 양을로125,125-1,129,129-1,131,133,135,137 양을로133번길 1,3-1~2,4,4-1,6,6-1~3,6-5~6,8
		2	산정동 305-12 양을로133번길 3,201~213호(산정아파트) 양을로133번길 3,301~313호(산정아파트) 8-1~4,9,9-1,10,10-1,11,11-1,12,12-1,13,18
		3	연산동 326-18, 산정로 279 양을로143번길 3-1,5,5-1~2,9,11,11-2, 13,13-1,15-1,15-3~4,17, 17-1,21,21-1, 21-3~5,23,23-1,24~25
		4	산정동 287-37 양을로 137-2, 139, 139-1 양을로133번길6-4,19-1~2,21,21-1, 24,24-1,26 양을로141번길 2,9(베스트빌 2동),11(베스트빌 1동)양을로143번길 1,3
	5통	1	산정동 243-76 양을로99번길 14,14-1,16,16-1,16-3~6,18,18-1 연산로101번길 12,12-1~3,14 연산로123번길 19-2,19-4,19-6,21,25,27,27-1,29
		2	산정동 987,987-3, 양을로 109-7 연산로101번길 2,4,4-1,8,8-1~3,10-1~4 연산로123번길 18,18-1,19-1,19-5,24 산정동 237-3, 237-5, 238-1, 238-14 양을로 109-1, 109-3, 109-7-8, 115, 117
	6통	1	양을로 85, 87, 89(상가) 양을로 91,101동101~1502호(일신아파트) 양을로 91,101동103~1405호(일신아파트)
	9통	2	연산동 963-6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148-1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3통	4	행하길 21,22,22-1,23~24,26,28,28-1~5,32,32-1~2 행하길20번길 3,3-1~3,5,5-1~2
	4통	1	산정동 287-67 양을로125,125-1,129,129-1,131,133,135,137 양을로133번길 1,3-1~2,4,4-1,6,6-1~3,6-5~6,8
		2	산정동 305-12 양을로133번길 3,201~213호(산정아파트) 양을로133번길 3,301~313호(산정아파트) 8-1~4,9,9-1,10,10-1,11,11-1,12,12-1,13,18
		3	연산동 326-18, 산정로 279 양을로143번길 3-1,5,5-1~2,9,11,11-2, 13,13-1,15-1,15-3~4,17, 17-1,21,21-1, 21-3~5,23,23-1,24~25
		4	산정동 287-37 양을로 137-2, 139, 139-1 양을로133번길6-4,19-1~2,21,21-1, 24,24-1,26 양을로141번길 2,9(베스트빌 2동),11(베스트빌 1동)양을로143번길 1,3
	5통	1	산정동 243-76 양을로99번길 14,14-1,16,16-1,16-3~6,18,18-1 연산로101번길 12,12-1~3,14 연산로123번길 19-2,19-4,19-6,21,25,27,27-1,29
		2	산정동 987,987-3, 양을로 109-7 연산로101번길 2,4,4-1,8,8-1~3,10-1~4 연산로123번길 18,18-1,19-1,19-5,24 산정동 237-3, 237-5, 238-1, 238-14 양을로 109-1, 109-3, 109-7-8, 115, 117
	6통	1	양을로 85, 87, 89(상가) 양을로 91,101동101~1502호(일신아파트) 양을로 91,101동103~1405호(일신아파트)
	9통	2	연산동 963-6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148-1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15	1	산정동 1057-149 양을로41번길 14,14-1 양을로53번길 14,16,16-1 양을로55번길 14-1~2,16,16-1~2,17-1,18,18-1~2,19~20, 20-1~3
		2	산정동 1057-86,1057-87,1057-171 양을로53번길 2,4,4-1~2,6,6-1~3,8-1 양을로55번길 1,1-1,3,3-1~4,5,6-2~4,7,7-1~2,8,8-1~3,9,10, 10-1~3,11,11-1~2,12,14,15,17
		3	산정동 1055-30 양을로41번길 16(대진오피스텔),18,20-1~2 양을로55번길 2-1~4,4,4-1~2,6,6-1 양을로57번길 1-1,3
		4	양을로57번길 9(보광빌라 라동),14(태승빌라),15(보광빌라 다동), 17(보광빌라 나동),19(보광빌라 가동),21 양을로79번길 24
	16	1	양을로 65,67,67-1,75,77,79 양을로79번길 10,12,15,15-1~8,18,19(스타빌라)
		2	양을로 59 양을로57번길 2, 2-1~10, 4,4-1, 6, 6-1, 8
		3	산정동 1008-9,1008-11 마파지로 60-3~8,64,66,66-1~5,70,70-1~6,72,72-1 양을로 54,56-1~3,58,58-1~2 양을로68번길 10
		4	산정동 178-60,178-63,180,180-1,180-5 마파지로 67,67-1~3,71,73,75,75-1,77,77-1~2,79,79-1~2,81-1~2,87 양을로 60,64,64-1~2,68,68-1~3,70,72,74,76,78,80,82 양을로68번길 2
	17	1	산정동 178-57 철로마을길31번길 14-3,21,23 양을로68번길 7 연산로59번길 32 마파지로 74,74-1~9,76,76-1,78,78-1,80,80-1,82,82-1~2,84, 84-1~2,86
		2	철로마을길31번길 6-1~2,12,13,14,14-1~2,15,15-1~3,16,17,19 연산로59번길 22-1~2,24 마파지로 86-1~7,88,88-1,90
		3	철로마을길31번길 6, 32,32-1~2,33,33-1,34,35,36 양을로 86,90 마파지로 90-1~6,92
		4	산정동 154-106 철로마을길31번길 7-3,9,9-1~5,11,11-1~2 연산로59번길 16-6~9,19,19-1~2,19-4,21,21-1~2,22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18	1	양을로 100-3~4 양을로98번길 5,5-1,7,7-1,9,9-1~4,11,11-1~2,12,12-1,16,16-1 연산로 67,77,81
		2	산정동 146-24 철로마을길 21,23,23-1,24,24-1~2,25~27,27-1,31(포포빌라) 철로마을길31번길 3,5,5-1,7,7-1~2 연산로59번길 3,3-1,4,6,6-1~2,8,14,14-1,16,16-1~5
		3	산정동 148-23, 213-4, 214-1 철로마을길32번길 4,5,5-1~4,6,6-1,7~8,10,10-1~3,11,11-1, 12,12-1~2,13,13-1,14,15,15-2,16,18 연산로 61
		4	철로마을길 32-3~9 철로마을길32번길 1,3,3-1~2 양을로 92,94,96 양을로98번길 4,4-1~2,6,10,10-1~2
	19	1	산정동 1039-42~43, 신촌로 34 양을로 108, 108-1~4 연산로 84 원호길 2,4,4-1,6,8 원호길4번길 2,3,3-1,4,5,5-1~2,6,6-1~2,7,7-1,8,8-1,9,9-1,10, 10-1~2
		2	산정동 1039-10,1039-51 양을로122번길 6-3,6-5,6-10 원호길 5,5-1~3 원호길5번길 6,6-1,12 원호길7번길 1,3,3-1,5,5-1~2,7,7-1~2,9,9-1,11,11-1
		3	산정동1039-114,1039-132 양을로122번길 5,7,7-1 원호길5번길 14-6~8 원호길7번길 2,2-1,4,6,6-1,8,10,12,12-1
		4	양을로 112,116,116-1~7,120,120-1~4 원호길 1,3,3-1 원호길5번길 1,1-1,3,3-1,5,5-1,7,9,9-1,11
	20	1	산정동 266,266-27,1036-26,1036-28,1036-31~32 원호길5번길 14,14-1~5,20(가온누리빌)
		2	산정동 258-1~2 양을로 128(산체스오피스텔) 원호길5번길 15(울스카이)
		3	산정동 261-1,268-4,269-1,270-13,270-31,270-42~45,1035-8,1036-12, 양을로 130,136,140,144,146,148 양을로148번길 4,6,8,10,11,11-1,12,12-1~2 원호길5번길 19,21,26,26-1~2,28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0	4	산정동 311,312-1,314-6,314-29,326-20 양을로 155-1 양을로143번길 18-3(폴하우스),18-7(거성프라임 빌리지) 산정로 245,247,249,251,251-1~2,257,259,259-1,261-1~2,263,265
		5	산정동 274-1,275-3 양을로 145,145-1,149,151,155 양을로143번길 4-8~11,4-13~14,6,8,8-1,12,12-1,14(연산캐슬), 14-1(문화하우스), 16
	21	1	산정동 1040-154, 신촌로16번길 1,1-1~2,3,3-1,3-4~7 신촌로20번길 1,3,3-1~7,4,4-1~4,5,5-1,5-3~5,5-7~9,5-11,6~7, 7-1~3, 8, 신촌로 20,20-1~2,22,22-1~2,24, 24-1~2
		2	산정동 1040,1040-117,1040-120,1040-127,1040-204,1040-206 신촌로16번길 3-8,5-2~7,7,7-1 신촌로20번길 7-4,9-1~2,11,11-1,12,12-1,13,신촌로 26,26-1
		3	산정동 1040,1040-115, 신촌로8번길 5-1 신촌로12번길 5,6,6-1,7,7-1,8, 신촌로14번길 5,5-1,6-1,7,8-1 신촌로16번길 6,7-2~3,8~9, 산정로186번길 3 산정로199번길 2
	22	1	신촌로2번길 2,4,4-1,8 산정로 215,217,219-1,221-2~3
		2	용당동 972-110 신촌로2번길 14,14-1~5,16 산정로 225-3~5,227,227-1~3,229-2~3
		3	신촌로2번길 11-2
		4	용당동 972-14,972-16,972-37,972-38,972-40,972-57,972-142 신촌로2번길 8-1,10,12-2 산정로 221-4~6,221-8~9,223,225,225-1~2

별표 중 용해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해동	39	1	용해지구로88번길 7, 201동(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 카운티아파트)
		2	용해지구로88번길 7, 202동(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3	용해지구로88번길 7, 203동(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4	용해지구로88번길 7, 204동(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5	용해지구로88번길 7, 205동, 관리사무소(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 카운티아파트)

별표 중 옥암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옥암동	21	1	옥암로 150, (한국아델리움 2차아파트 101동, 상가동)
		2	옥암로 150, (한국아델리움 2차아파트 102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3통	4	행하길 15-1 , 21, 22, 22-1, 23~24, 26, 28, 28-1~5, 32, 32-1~2 행하길20번길 3, 3-1~3, 5, 5-1~2	3통	4	행하길 21, 22, 22-1, 23~24, 26, 28, 28-1~5, 32, 32-1~2 행하길20번길 3, 3-1~3, 5, 5-1~2
산정동	4통	1	산정동 287-67 양을로 125, 125-1, 129, 129-1, 131, 133, 135, 137 양을로133번길 1, 3-1~2, 4, 4-1, 6, 6-1~3, 6-5~6	4통	1	산정동 287-67 양을로 125, 125-1, 129, 129-1, 131, 133, 135, 137 양을로133번길 1, 3-1~2, 4, 4-1, 6, 6-1~3, 6-5~6, 8
		2	산정동 305-12, 양을로 139 양을로133번길 3, 201~213호(산정아파트) 양을로133번길 3, 301~313호(산정아파트) 8-1~4, 9, 9-1, 10, 10-1, 11, 11-1, 12, 12-1, 13, 18		2	산정동 305-12 양을로133번길 3, 201~213호(산정아파트) 양을로133번길 3, 301~313호(산정아파트) 8-1~4, 9, 9-1, 10, 10-1, 11, 11-1, 12, 12-1, 13, 18
		3	연산동 326-18, 산정로 279 양을로133번길 8 양을로143번길 3-1, 5, 5-1~2, 9, 11, 11-2, 13, 13-1, 15-1, 15-3~4, 17, 17-1, 21, 21-1, 21-3~5, 23, 23-1, 24~25		3	연산동 326-18, 산정로 279 양을로143번길 3-1, 5, 5-1~2, 9, 11, 11-2, 13, 13-1, 15-1, 15-3~4, 17, 17-1, 21, 21-1, 21-3~5, 23, 23-1, 24~25
		4	산정동 287-37 양을로 137-2, 139-1 양을로133번길6-4, 19-1~2, 21, 21-1, 24, 24-1, 26 양을로141번길 2, 9(베스트빌 2동), 11(베스트빌 1동)양을로143번길 1, 3		4	산정동 287-37 양을로 137-2, 139 , 139-1 양을로133번길6-4, 19-1~2, 21, 21-1, 24, 24-1, 26 양을로141번길 2, 9(베스트빌 2동), 11(베스트빌 1동)양을로143번길 1, 3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5통	1	산정동 243-76 양을로99번길 14,14-1,16,16-1, 16-3~6,18,18-1 연산로101번길 2,10-1~2,12,12-1~3,14 연산로123번길 19-2,19-4,19-6,21, 25,27,27-1,29	5통	1	산정동 243-76 양을로99번길 14,14-1,16,16-1, 16-3~6,18,18-1 연산로101번길 12,12-1~3,14 연산로123번길 19-2,19-4,19-6,21, 25,27,27-1,29
		2	산정동 987,987-3, 양을로 109-7 연산로101번길 4,4-1,8,8-1~3,10-3~4 연산로123번길 18,18-1,19-1,19-5,24 산정동 237-3, 237-5, 238-1, 238-14 양을로 109-1, 109-3, 109-7~8, 115, 117		2	산정동 987,987-3, 양을로 109-7 연산로101번길 2,4,4-1,8,8-1~3,10-1~4 연산로123번길 18,18-1,19-1,19-5,24 산정동 237-3, 237-5, 238-1, 238-14 양을로 109-1, 109-3, 109-7~8, 115, 117
산정동	6통	1	양을로 89(상가) 양을로 91,101동101~1502호(일신아파트) 양을로 91,101동103~1405호(일신아파트)	6통	1	양을로 85, 87, 89(상가) 양을로 91,101동101~1502호(일신아파트) 양을로 91,101동103~1405호(일신아파트)
산정동	9통	2	연산동 963-6, 산정로 308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 148-1	9통	2	연산동 963-6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 148-1
산정동	15통	1	산정동 1057-86,1057-149 양을로41번길 14 양을로53번길 16,16-1 양을로55번길 14-2,16-2,18,18-2, 19~20,20-1~3	15통	1	산정동 1057-149 양을로41번길 14, 14-1 양을로53번길 14, 16, 16-1 양을로55번길 14-1~2, 16, 16-1~2,17-1,18,18-1~2,19~20, 20-1~3
		2	산정동 1057-86,1058-86,1058-87 양을로53번길 2,2-1,4,4-1~2,6-1~3 양을로55번길1-1,3,3-1~4,5,6-2~3, 7,7-1~2,8,8-1~3,9~10,10-1~2, 11,11-2,12,14,17		2	산정동 1057-86,1057-87,1057-171 양을로53번길 2,4,4-1~2,6,6-1~3,8-1 양을로55번길 1,1-1,3,3-1~4,5, 6-2~4,7,7-1~2,8,8-1~3,9,10,10-1 ~3, 11,11-1~2,12,14,15,17
		3	산정동 1055-30,1057-128, 1057-130,1057-131,1057-156 양을로 54,56-1,56-3 양을로41번길14-1,16(대진오피스텔),20-1~2 양을로55번길 2,2-1~4,4,4-1,6,6-1 양을로57번길 1-1		3	산정동 1055-30 양을로41번길16(대진오피스텔),18 20-1~2 양을로55번길 2-1~4,4,4-1~2,6,6-1 양을로57번길 1-1,3
		4	양을로57번길 9(보광빌라 라동),14 (태승빌라),15(보광빌라 다동), 17(보광빌라 나동),19(보광빌라 가동) 양을로79번길 24		4	양을로57번길 9(보광빌라 라동),14 (태승빌라),15(보광빌라 다동), 17(보광빌라 나동),19(보광빌라 가동),21 양을로79번길 24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16통	1	산정동 180,180-4 마파지로 77-2,79,81-1 양을로79번길10,12,15,15-1, 15-3,15-5	16통	1	양을로 65, 67, 67-1, 75, 77, 79 양을로 79번길 10,12,15,15-1~8, 18, 19(스타빌라)
		2	산정동 1006 마파지로 67-1~2 양을로 64-2,67,68-1 양을로79번길 15-6~8,19(스타빌라)		2	양을로 59 양을로 57번길 2, 2-1~10, 4,4-1, 6, 6-1, 8
		3	산정동 1008-9,1008-11 마파지로60-3~4,60-6,60-8, 64,66,66-1~5,70-1,70-3~6,72 양을로68번길 10		3	산정동 1008-9,1008-11 마파지로60-3~8, 64,66,66-1~5,70,70-1~6,72,72-1 양을로 54,56-1~3,58,58-1~2 양을로68번길 10
		4	산정동 178-59,178-60, 178-63,180,180-1,180-5 마파지로67,72-1,73,75,75-1, 77,77-1,79,79-2,81-2,87 양을로 72,78		4	산정동 178-60,178-63,180,180-1, 180-5 마파지로 67,67-1~3,71,73,75, 75-1,77,77-1~2,79,79-1~2,81-1~2,87 양을로 60,64,64-1~2,68,68-1~3,70 72,74,76,78,80,82 양을로68번길 2
산정동	17통	1	산정동 177-3,178-57 철로마을길31번길 6-2,14-3,21 양을로68번길 7 연산로59번길 32 마파지로74,74-1~5,74-8,76, 76-1,78,78-1,80,80-1,82, 82-1,84, 84-1~2,86,86-7,88-1	17통	1	산정동 178-57 철로마을길31번길 14-3,21,23 양을로68번길 7 연산로59번길 32 마파지로74,74-1~9,76,76-1,78,78-1, 80,80-1,82,82-1~2,84, 84-1~2,86
		2	산정동 154-106 마파지로 84-2,86-1~3,86-5~6 철로마을길3번길 14-1~2 철로마을길31번길 11,13,14,14-1~2, 15-3,19 연산로59번길 22-1		2	철로마을길31번길 6-1~2,12, 13,14,14-1~2,15,15-1~3,16,17,19 연산로59번길 22-1~2,24 마파지로 86-1~7,88,88-1,90
		3	산정동 178-96,189-5 마파지로 87,90,90-1~6,92 철로마을길 32,32-1~2,33,33-1, 34,36 양을로 82,85~87,90		3	철로마을길31번길6, 32,32-1~2,33 33-1,34,35,36 양을로 86,90 마파지로 90-1~6,92
		4	연산로59번길 16-6~9,19,19-2,22 철로마을길31번길7-3,9,9-2,9-4, 11-1~2		4	산정동 154-106 철로마을길31번길7-3,9,9-1~5,11, 11-1~2 연산로59번길 16-6~9,19,19-1~2, 19-4,21,21-1~2,22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18통	1	산정동209-9,219-7,221,221-1,221-2 양을로98번길 5,6,7,7-1,9,9-1~4, 11,11-1~2,12,12-1,16,16-1 연산로 67	18통	1	양을로 100-3~4 양을로98번길5,5-1,7,7-1,9,9-1~4, 11,11-1~2,12,12-1,16,16-1 연산로 67,77,81
		2	산정동 146-24,148-23,214-1 철로마을길21,23,23-1,24,24-1~2, 25~27,31(포포빌라) 연산로59번길3,3-1,4,6,6-1~2,8,14, 14-1,16,16-1~5 철로마을길31번길3,5,5-1,7,7-1~2 철로마을길32번길11-1,12-1~2, 13,13-1,14~15,15-2,16,18		2	산정동 146-24 철로마을길21,23,23-1,24,24-1~2, 25~27,27-1,31(포포빌라) 철로마을길31번길3,5,5-1,7,7-1~2 연산로59번길3,3-1,4,6,6-1~2,8,14, 14-1,16,16-1~5
		3	철로마을길32번길4,5,5-1~4,6,6-1, 7~8,10,10-1~3,11~12		3	산정동 148-23, 213-4, 214-1 철로마을길32번길4,5,5-1~4,6,6-1, 7~8,10,10-1~3,11,11-1,12,12-1 ~2,13,13-1,14,15,15-2,16,18 연산로 61
		4	산정동 213-4 철로마을길 32-3~5,32-7~9 철로마을길32번길 3-1,10-3 양을로98번길 10,10-1~2		4	철로마을길 32-3~9 철로마을길32번길 1, 3, 3-1~2 양을로 92,94,96 양을로98번길 4,4-1~2,6,10,10-1~2
산정동	19통	1	산정동 1039-42~44,1039-51, 1039-154 원호길 2,4,4-1,6 양을로 108-1~4 원호길4번길 2,3-1,4,5,5-1~2,6, 6-1~2,7,7-1,8,8-1,9,9-1,10, 10-1~2	19통	1	산정동 1039-42~43 신촌로 34 양을로 108, 108-1~4 연산로 84 원호길 2,4,4-1,6,8 원호길4번길 2,3,3-1,4,5,5-1~2,6, 6-1~2,7,7-1,8,8-1,9,9-1,10, 10-1~2
		2	원호길7번길1,3,3-1,5,5-1~2,7, 7-1~2,9,9-1,11,11-1 원호길 5-3 양을로122번길 6-3,6-5		2	산정동 1039-10,1039-51 양을로122번길 6-3,6-5,6-10 원호길 5,5-1~3 원호길5번길 6,6-1,12 원호길7번길 1,3,3-1,5,5-1~2,7, 7-1~2,9,9-1,11,11-1
		3	산정동1039-10,1039-114, 1039-115,1039-131,1039-132 양을로122번길 5,7,7-1 원호길5번길 14-6~8 원호길7번길 2,2-1,4,6,6-1,8,10,12		3	산정동1039-114,1039-132 양을로122번길 5,7,7-1 원호길5번길 14-6~8 원호길7번길 2,2-1,4,6,6-1,8,10, 12,12-1
		4	산정동 192-2,204,230-2,251-1, 252,1039-33 양을로 92,108,112,116 양을로98번길 4,4-2 원호길 1,3		4	양을로 112,116,116-1~7,120, 120-1~4 원호길 1,3,3-1 원호길5번길 1,1-1,3,3-1,5,5-1,7,9, 9-1,11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0통	1	산정동 1039-12,1039-20 양을로 116-1~7,120,120-2 원호길5번길 1,1-1,3,3-1,5,5-1,6,6-1, 7,9-1,11~12 원호길 5,5-1~2 원호길4번길 3 양을로122번길 5,6-10	20통	1	산정동 266,266-27,1036-26, 1036-28,1036-31~32 원호길5번길 14,14-1~5,20(가온누리빌)
		2	양을로 128(산체스오피스텔) 원호길5번길 15(울스카이)		2	산정동 258-1~2 양을로 128(산체스오피스텔) 원호길5번길 15(울스카이)
		3	산정동 257-2,258-1,261-1,265-4, 267-5,268-6,269-1,270-13, 270-31,270-42~45,1036-29,1036-31, 1036-32 양을로 120-3,130,146 원호길5번길 14-1,14-3,14-5,26, 26-1~2,28 산정로 235 양을로148번길4,6,8,10~11,11-1, 12,12-1~2 양을로122번길 9-5,9-7,9-9		3	산정동 261-1,268-4,269-1,270-13, 270-31,270-42~45,1035-8,1036-12, 양을로 130,136,140,144,146,148 양을로148번길 4,6,8,10,11,11-1, 12,12-1~2 원호길5번길 19,21,26,26-1~2,28
		4	산정동 314-30 산정로 245,247,249,251,251-1~2 양을로 155-1 양을로143번길 4-4,4-8		4	산정동 311,312-1,314-6,314-29, 326-20 양을로 155-1 양을로143번길 18-3(풀하우스), 18-7(거성프라임 빌리지) 산정로 245,247,249,251,251-1~2, 257,259,259-1,261-1~2,263,265
		5	산정동 311,312-1,326-20 양을로 145 양을로143번길 4-4,4-8~11,4-14, 6,8-1,12,14(연산캐슬),14-1(문화하우스), 18-3(풀하우스) 산정로 261-1		5	산정동 274-1,275-3 양을로 145,145-1,149,151,155 양을로143번길 4-8~11,4-13~14, 6,8,8-1,12,12-1,14(연산캐슬),14-1 (문화하우스),16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1통	1	산정동 1040-154 신촌로16번길 1,1-1~2,3,3-1, 3-4~7, 5-2 신촌로20번길 1,3,3-1~7,4,4-1~4, 5,5-1,5-3~5,5-7~9,5-11,6~7, 7-1~3, 8, 9-1 신촌로 20,20-1~2,22,22-1~2,24, 24-1~2	21통	1	산정동 1040-154 신촌로16번길 1,1-1~2,3,3-1, 3-4~7 신촌로20번길 1,3,3-1~7,4,4-1~4, 5,5-1,5-3~5,5-7~9,5-11,6~7, 7-1~3, 8 신촌로 20,20-1~2,22,22-1~2,24, 24-1~2
		2	산정동 1040,1040-117,1040-120, 1040-127,1040-204,1040-206 신촌로16번길 3-8,5- 3 ~7,7,7-1, 7-3 신촌로20번길 7-4,9-1~2,11,11-1,12, 12-1,13,신촌로 26,26-1		2	산정동 1040,1040-117,1040-120, 1040-127,1040-204,1040-206 신촌로16번길 3-8,5- 2 ~7,7,7-1 신촌로20번길 7-4,9-1~2,11,11-1,12, 12-1,13,신촌로 26,26-1
		3	산정동 1040,1040-115 신촌로8번길 5 ,5-1 신촌로12번길 5,6,6-1,7,7-1,8 신촌로14번길 5,5-1,6-1,7,8-1 신촌로16번길 6,7-2~3,8~9 산정로186번길 3 산정로199번길 2		3	산정동 1040,1040-115 신촌로8번길 5-1 신촌로12번길 5,6,6-1,7,7-1,8 신촌로14번길 5,5-1,6-1,7,8-1 신촌로16번길 6,7-2~3,8~9 산정로186번길 3 산정로199번길 2
산정동	22통	1	신촌로2번길 2,4,4-1,8 산정로 215,217,219-1,221-2~3	22통	1	신촌로2번길 2,4,4-1,8 산정로 215,217,219-1,221-2~3
		2	용당동 972-110 신촌로2번길 14, 14-2 ,16 산정로 225-3~5,227,227-1~3,229-2~3		2	용당동 972-110 신촌로2번길 14, 14-1~5 ,16 산정로 225-3~5,227,227-1~3,229-2~3
		3	신촌로2번길 11-2		3	신촌로2번길 11-2
		4	용당동 972-14,972-16,972-37,972-38, 972-40,972-57,972-142 신촌로2번길 8-1,10,12-2, 14-5 산정로 221-4~6,221-8~9,223,225, 225-1~ 3		4	용당동 972-14,972-16,972-37,972-38, 972-40,972-57,972-142 신촌로2번길 8-1,10,12-2 산정로 221-4~6,221-8~9,223,225, 225-1~ 2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해동			신 설	39	1	용해지구로88번길 7, 201동, 상가 (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2	용해지구로88번길 7, 202동 (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3	용해지구로88번길 7, 203동 (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4	용해지구로88번길 7, 204동 (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5	용해지구로88번길 7, 205동, 관리사무소 (용해동, 용해지구 천년가 맘스카운티아파트)
옥암동	21		신 설	21	1	옥암로 150, (한국아델리움 2차아파트 101동, 상가동)
					2	옥암로 150, (한국아델리움 2차아파트 102동)

목포시 공고 제2019-1332호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부문화 확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의 규정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안 제1~4조)
-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 (안 제5~6조)
 - 기부증서 발급 및 각종 행사 초청과 시설이용 편의제공 가능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안 제7~8조)
 -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등 (안 제9~11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심의요구 및 회의 (안 제12~13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 심의결과통보, 수당, 시행규칙 (안 제14~17조)

3. 조례 제정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19. 9. 30. ~ 2019. 10. 21.(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1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처: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270-3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관광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이전에 구성된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탁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목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의 건 서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생년월일		기탁 방법	

1. 신청개요

- 가. 기탁예정일
- 나. 기탁금품의 종류, 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 마. 방문모집허가 신청의 경우 그 취지
- 바.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 성명
- 사.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 가. 관련부서
- 나. 세정과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 「목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 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목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목포시장 귀하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가.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 · 수정의결 · 부결 · 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 · 보류)이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1334호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증서 및 명부관리, 예우카드 발급으로 기부자의 예우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위원회 의원의 위촉장, 심의요구 통보, 회의록 작성등의 의무를 정함 (안 제4~9조)

3. 조례 제정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19. 9. 30. ~ 2019. 10. 21.(21일간)

9.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1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처: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270-3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서식의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의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는 작성을 생략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000- 호

기 부 증 서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illegible]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위 축 장

○ ○ ○

귀하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목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현 원	참 석	불 참	참석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시 설 이 용 권

기부증서번호 :

시 설 이 용 권

(기부자 : 〇〇〇)



목 포 시 장 직인

이용대상시설

시 설 명	비 고
목포자연사박물관	입장료 면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입장료 면제
목포시립예술단체연주회	입장료 면제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면제

발급일 : 20〇〇. 〇〇. 〇〇.

- 본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시설 이용은 본인에 한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1347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범위 확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여성가족과-37936(2019.9.27.) : 2019A전남목포048

8.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9. 입법예고 : 2019. 9. 30. ~ 10. 21.(21일간)****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안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8695,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4층 (환경보호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환경보호과(☎061-270-8190, FAX 270-3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내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남녀 분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11조 (생략)	제1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내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내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남녀 분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 제19조 (생략)	제13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발 체 서

관 련 법 령	내 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u>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u>협의하여</u>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로 <u>지정할 수 있다</u>.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u>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개정 2017. 5. 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9-1349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정비로 상인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을 위한 토대 마련

2. 주요내용

- 상인회의 등록취소(제22조)
 -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당사자 권익 보호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제30조의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완화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제34조의 2)
 - 시장정비사업의 혼선 방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3항
제38조의2제3항, 제65조제10항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8.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2019. 9. 30. ~ 10. 21.(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농업정책과)]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061-270-8087, FAX 270-3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0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의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u>
<u>〈신 설〉</u>	<u>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10년으로 한다.</u> <u>②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u> <u>③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u> <u>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u> <u>⑤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

〈신 설〉

제34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책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u>로 정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시·군·구의 조례</u>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시·군·구의 조례</u>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